도이치 글로벌 토탈리턴 스트래티지 재간접 투자신탁 1호

2011.03.18 투자설명서 변경

주요변경내용

내용	변경후
작성기준일	2011.03.15
운용성과 –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수익률	2011.03.07 기준 업데이트
자산운용회사의 최근 2개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	2010.03.31 기준 업데이트
자산운용회사에 관한 내용	<문구 추가> 집합투자업자는 계열관계에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국내 연락책임자로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등록, 유지 및 마케팅지원업무 등의 대가로 외국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용역보수를 받습니다. 용역보수는 국내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금액(국내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금액 및 국내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금액 등을 포함)을 기준으로 계열관계에 있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순운용보수의 50%까지로 계산됩니다. 단, 용역보수율은 계약변경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있습니다.
과세 관련 문구 수정 및 세율 정정	환급세액 관련 문구 수정 변경전 :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변경후 : 투자신탁은 해외에서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 한도(14%)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외국원천 징수세액의 환급 금액은 한국 및 투자대상국가의 조세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 질 수있으며, 경우에 따라 환급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. 개인소득세율(2011 년 3월 2 일 현재 최고한도 세율 36.3% (소득세 33% 및 주민세 3.3% 포함)) 법인세율(2011 년 3 월 2 일 현재 최고 한도세율 24.2%(법인소득세 22% 및 법인주민세 2.2% 포함)) <주의문구 수정> ※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, 정부 정책,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